

# 대구직할시건축조례 개정조례

## 대구직할시건축조례 개정조례

대구직할시조례제1665호

대구직 할시건축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대 구 직 할 시 건 축 조 레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직 할시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 2 장 풍치지구안의 건축제한

**제 3 조 (용도제한)** 풍치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영부표 제 4 항(근린생활시설) 중 제 6 호내지 제 9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격리병원

3. 직업훈련소 사설강습소

4. 일반업무시설

5. 일반숙박시설

6. 판매시설

7. 위탁시설

8. 공장

9. 창고시설

10.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 운수시설

12. 자동차관련시설

13. 동물관련시설

14. 쓰레기오물처리장

15. 교정시설

16. 묘지관련시설

17. 아파트

**제 4 조 (전폐율)** 풍치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폐율은 1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주거지역에 지정된 풍치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폐율은 10분의 4로 한다.

**제 5 조 (건축물의 높이)** 풍치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6층을 초과할 수 없다.

**제 6 조 (대지안의 조경)** 풍치지구안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당해 대지안에 대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에 해

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7 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풍치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600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주거지역에 지정된 풍치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200제곱미터로 한다.

**제 8 조 (대지안의 공지)** 풍치지구안의 건축물은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거리이상을 띠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담장 및 바닥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과 기준건축물의 수직 방향의 중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외벽 각 부분까지의 거리 : 2 미터

2.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외벽 각 부분 까지의 거리 : 1 미터

#### 제 3 장 미관지구안의 건축제한

**제 9 조 (지구의 세분)**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미관지구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제 1 종 미관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극히 높은 구역에 대하여 지정한 미관지구

2. 제 2 종 미관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비교적 높은 구역에 대하여 지정한 미관지구

3. 제 3 종 미관지구 : 관광에 직접 필요한 도로연변과 시가지로부터 관광지 또는 사적지에 이르는 도로연변에 지정한 미관지구

4. 제 4 종 미관지구 : 한국고유의 건축양식을 보존하거나 전통적 미관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에 지정한 미관지구

5. 제 5 종 미관지구 : 제 1 종 내지 제 4 종 미관지구 이외에 그 환경의 미관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에 지정한 미관지구

**제10조 (건축심의)** ① 대구직 할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관지구안의 건축물(단독주택을 제외한다)의 건축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모양과 색채에 관하여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절차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용도제한)** ① 제 1 종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없다.

1. 도매시장·시장
2. 철물 기타 폐품류를 취급하는 고물상·건재상·공구상·철물점
3. 공장
4. 창고시설
5. 교정시설
6. 격리병원
7. 정육점, 세탁소, 장의사
8. 묘지관련시설
9. 자동차관련시설
10.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 공동주택·기숙사
- ② 제 2 종 미관지구안에서는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9 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 ③ 제 3 종 미관지구안에서는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8 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 ④ 제 4 종 미관지구안에서는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6 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 ⑤ 제 5 종 미관지구안에서는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5 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12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미관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면적으로 한다.

1. 제 1 종 미관지구 : 300제곱미터
2. 제 2 종 미관지구 : 200제곱미터
3. 제 3 종 미관지구 : 200제곱미터
4. 제 4 종 미관지구 : 150제곱미터
5. 제 5 종 미관지구 : 200제곱미터

**제13조** (대지 안의 공지)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은 주된 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띠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 1 종 미관지구 : 3 미터
2. 제 2 종 미관지구 : 3 미터
3. 제 3 종 미관지구 : 2 미터
4. 제 4 종 미관지구 : 2 미터

**제14조** (건축물의 높이) 제 4 종 미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4층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건축물의 규모) ① 미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은 다음에 정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인접하여 기존건축물 또는 도로등이 있어 부득이한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 1 종 내지 제 3 종 미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층의 수에 따라 다음표에 정하는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단독 주택의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단위 : 미터)

구 분	건축물의 앞면길이	건축물의 옆면길이
제 1 종 미관지구	15	8
제 2 종 미관지구	10	6
제 3 종 미관지구	15	9
제 4 종 미관지구	—	—
제 5 종 미관지구	10	6

(단위 : 제곱미터)

총 의 수	전 축 면 적
3 총 이 하	100
4 총 - 10 총	150
11 총 - 15 총	400
16 총 - 이 상	500

**제16조** (부속건축물의 규모) 시장은 미관지구안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속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 (건축물의 모양) 시장은 미관지구안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 및 색채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 (건축물의 부수시설 등) ①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 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③ 시장은 미관지구안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수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 제 4 장 교육연구지구안의 건축제한

**제19조** (용도제한) 교육연구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영부표 제 4 항 (근린생활시설) 중 제 6 호 내지 제 9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격리병원
3. 숙박시설
4. 판매시설
5. 위락시설
6. 관람집회시설
7. 공장
8. 창고시설
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교정시설
11. 묘지관련시설

#### 제 5 장 업무지구안의 건축제한

**제20조** (용도제한) 업무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 공동주택·기숙사
2. 종교시설
3. 객리병원
4.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5. 시장
6. 위락시설
7. 관람장
8. 공장
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자동차관련시설
11. 동물관련시설
12. 쓰레기오물처리장
13. 교정시설
14. 묘지관련시설

## 제 6 장 공지지구안의 건축제한

**제21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공지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면적으로 한다.

1. 제 1 종 공지지구 : 500제곱미터
2. 제 2 종 공지지구 : 400제곱미터
3. 제 3 종 공지지구 : 200제곱미터

**제22조** (대지안의 공지) 제 1 종 공지지구안의 건축물은 주된 도로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건축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띠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담장 및 바닥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과 기존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중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선으로부터 외벽 각부분까지의 거리 : 4 미터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외벽 각부분까지의 거리 : 2 미터

## 제 7 장 공항지구안의 건축제한

**제23조** (용도제한) 공항지구안에서는 영 제78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과 다음 각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발전소
2. 제련소
3. 요업공장
4. 화학공장

**제24조** (건축물의 높이) 시장은 항공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높이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다.

## 제 8 장 자연환경보전지구안의 건축제한

**제25조** (용도제한) 자연환경보전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1. 자연환경보전지구안에서 영위하는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에 필요한 건축물
2. 농수산물시험장 및 검사소
3.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4. 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의 주거용 건축물
5. 수족관, 동물원, 식물원
6. 균린공공시설
7. 일용품소매점·이용원·미용원·약국·의원·대중음식점·일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균린생활시설

## 제 9 장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제한

**제26조** (건축제한) 재해위험구역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1. 자동차관련시설
2. 동물관련시설
3. 운동시설
4. 흥행·전람회·공사용 가설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존치기간 6개월 이내의 가설건축물

## 제10장 대지안의 조경

**제27조** (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 9 조의 2 제 2 항 및 영 제15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식수등 조경은 다음표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2 미터 이상의 교목을 60퍼센트 이상 식재하여야 한다.

구 분	식재밀도 (제곱미터당)	상록비율 (퍼센트)
교목(줄기가 곧고 굵으며 높이 자라는 나무)	0.4본 이상	상록수 40 낙엽수 60
관목(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키가 낮은 나무)	0.6본 이상	

② 시장은 식수부적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 대신에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조각물·조원석·연못·분수대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 (조경공사비의 예탁) ① 영 제15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하는 조경공사는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경기술 자격취득자 2인이 이상이 조경예정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비 내역서상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공사비 예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장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로 인한 기준미달 건축물 및 대지

**제29조** (적용범위) 이 장의 규정은 법제53조의 7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 3 장 내지 제 5 장의 규정완화 대상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시장이 지정·공고하는 임선도로변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 (대지면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30제곱미터 이상으로 당해지역·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다음 각호에 의한 배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1. 도로폭 40미터 이상의 도로변: 2 분의 1  
2. 도로폭 40미터 미만의 도로변: 3 분의 1

## 제12장 건축위원회

제31조 (기능)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97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심의·조사 또는 건의한다.  
제32조 (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내지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보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시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4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5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는 책임위원을 두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하게 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5인이 상 10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하기로 한 때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 할 수 있다.

제36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 약간 인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건축 및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위원장의 제정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7조 (회의록의 비치 및 보고)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 (자료제출의 요구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소속하의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공무원의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39조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간사 및 서기와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3장 용적률

제41조 (용적률) 법 제40조 제1항 단서 및 영 제8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전용지역: 80퍼센트  
2. 주거지역: 300퍼센트  
3.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4. 상업지역: 1,000퍼센트  
5. 전용공업지역: 공업지역·준공업지역: 300퍼센트  
6. 자연녹지지역: 60퍼센트  
7. 생산녹지지역: 150퍼센트

제42조 (용적률의 완화) ① 법 제40조 제3항 및 영 제8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원·광장·공공공지 기타 이와 유사한 공공시설을 설치·조정하여 제공하는 때에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영 제86조 제1항(제41조)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1.5배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을 완화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大邱直轄市駐車場設置 및 管理條例

### 第1章 總 則

第1條 (目的) 이條例는 駐車場法(以下“法”이라 한다) 및 同法施行令(以下“令”이라 한다)에서 條例에 委任한 事項과 그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供用 時間) ① 路上 駐車場의 供用 時間은 夜間通行禁止 解除 1時間 以後부터 夜間通行禁止 1시간 前까지의 範圍内로 하되 市長이 따로 이를 定한다.  
② 駐車場의 供用 時間을 短縮하거나 法 第10條의 規定에 依하여 供用 을 制限하고자 할 때에는 制限時間,

期間, 區域, 事由 等을 當解 駐車場에 揭示하여야 한다.

**第3條 (駐車拒否 禁止)** 駐車場의 管理者は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駐車를 拒否할 수 없다.

1. 自動車의 構造上 駐車가 不可能하거나 困難한 車輛
2. 發火性 또는 引火性 物質을 繕載한 車輛
3. 駐車場의 構造設備을 損傷할 憂慮가 있는 車輛
4. 其他 駐車拒否의 正當한 事由가 있는 경우

**第4條 (駐車料金)** ① 法 第9條 및 法 第14條의 規定에 依한 路上 및 路外駐車場의 駐車料金의 上限額은 “別表1”과 같이 한다.

② 建築物 附設 駐車場의 管理를 為하여 駐車料金을 받고자 하는 者는 法 第12條 第2項의 規定에 準하여 市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第5條 (料金徵收方法)** ① 駐車料金은 駐車場에 自動車를 駐車하는 者로부터 徵收하되 駐車時에 駐車料金을 交付하고 料金徵收時에 領收證과 交換한다.

② 駐車場 管理者는 必要한 경우 令 第4條 第2項의 規定에 依한 回收駐車券 및 定期駐車券을 發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의 料金은 回收駐車券 또는 定期駐車券을 發行한 때에 徵收한다.

## 第2章 路上 및 路外駐車場

**第6條 (駐車場의 公告)** 市長이 駐車場을 設置하여 供用을 開始하고자 할 때에는 그 駐車場의 名称, 位置, 規模, 供用時間, 供用開始日, 其他 必要한 事項을 公告 하여야 한다.

**第7條 (駐車場의 標識)** ① 駐車場의 標識는 道路交通法 第3條 및 同法施行規則 第3條의 交通安全標識을 準用한다.

② 第1項의 경우 市長이 管理하는 路外駐車場의 標識는 “別紙 第1號書式”과 같이 한다.

③ 路上駐車場의 利用에 關한 案内標識의 規格은 “別紙 第2號書式”과 같이 하고 路外駐車場의 利用에 關한 案内標識의 規格은 “別紙 第3號書式”과 같이 하며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하여 利用者가 容易하게 볼 수 있는 場所에 設置하여야 한다.

1. 駐車料金 및 徵收方法 (車種別 徵收金額 明示)
2. 加算金 徵收에 關한 事項
3. 駐車場의 供用時間
4. 其他 注意事項

**第8條 (駐車區劃線 表示 等)** ① 駐車區劃의 1臺當 標準規格은 幅2.5미터 길이 6미터로 하되 駐車場與件에 따라 標準 駐車區域의 길이 및 幅에서 0.5미터 加減할 수 있다.

② 駐車區劃線의 表示方法은 市長이 따로 定하는 바에 依한다.

**第9條 (加算金)** ① 路上 및 市營路外駐車場에 駐車한 者가 出車時에 料金을 納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第4條 第1項의 料金과 同一한 額의 加算金을 賦課한다.

② 第1項의 加算金을 納付하지 아니한 者에 對하여는 地方稅滯納処分의 例에 依하여 이를 徵收할 수 있다.

**第10條 (料金의 減免)** 路上 및 市營路外駐車場에 駐車하는 自動車 中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경우에는 駐車料金을 免除한다.

1. 道路交通法 第2條 第13號의 規定에 依한 自動車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公用車輛
3. 其他 市長이 特別한 事由가 있다고 認定하는 自動車

**第11條 (料金의 還付)** ① 令 第4條 第3項 但書의 規定에 依하여 駐車料金을 還付할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基準에 依하여 還付額을 決定한다.

1. 回收駐車券 : 回收駐車券 1枚의 單價를 算出하여 使用할 수 없는 枚數에 對한 料金. 다만, 還付事由發生 當日駐車한 事實이 있을 경우에는 使用한 것으로 본다.
2. 定期駐車券 : 殘餘期間에 對한 料金은 還付事由發生日 翌日부터 適用하며 일할로 換算한 金額

② 第1項에 依하여 還付申請이 있을 때는 大邱市財務會計規則에 規定된 過誤納金의返還請求 및 節次에 따라 當該年度 歲入에서返還하며, 駐車場을 代行하였을 경우에는 代行運營者가返還한다.

다만, 還付申請과 同時に 残與分 回收駐車券 및 定期駐車券은返還하여야 한다.

**第12條 (駐車場 管理者の 責任)** ① 駐車場 管理者は 이 條例 또는 管理規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駐車場의 施設維持等 善良한 管理者の 義務를 다하여야 한다.

② 路外駐車場의 管理者は 駐車한 自動車의 保管에 對하여 第1項의 注意義務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證明한 경우를 除外하고는 自動車의 滅失 또는 崩壊으로 인한 損害賠償責任을 免하지 못한다.

## 第3章 建築物 附設駐車場

**第13條 (建築物 附設駐車場의 設置基準)** ① 駐車場整備 地區 안에서 延面積 1,000平方미터 以上의 建築物을 建築하고자 하는 者는 延面積 150平方미터 마다 駐車臺數 1臺의 駐車場을 그 建築物 또는 垈地안에 設置하여야 한다.

이 경우 建築物의 延面積에는 屋內駐車場 面積을 除外하며 1臺未滿의 單數臺數는 버린다. 以下 같다.

② 第1項 地區 이외의 都市計劃法 第17條의 規定에 依한 住居地域, 準住居地域 또는 準工業地域안에서 延面積 1,000m<sup>2</sup> 以上의 建築物로서 영 第6條 第1項 第1號 및 第2號에 定한 用途에 쓰이는 建築物을 建築하는 경우에는 그 用途에 쓰이는 部分의 연면적 200m<sup>2</sup> 마다 주차대수 1臺의 駐車場을 그 建築物 또는 대지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建築物 附設駐車場의 設置에 있어서는 “別表2”的 基準에 따라 屋外에 駐車할 수 있는 施設을 하여야 한다.

④ 再開發事業施行이나 特定街區整備地區 또는 都市設計에 依한 建築 其他 市長이 定하는 區域內의 建築에 있어서는 建築物別 駐車場 設置 代身에 그 區域의 共同駐車場을 第 1 項의 基準에 따라 設置 할 수가 있다.

第14條 (自動車의 進入路 等) ① 建築物 附設 駐車場의 進入路는 法施行規則 第 3 條 第 3 號 및 第 4 號 規定에 依한 路外駐車場의 出入口 設置 基準에 依한다.

② 建築物 附設 駐車場의 進入路 (地下路 進出入 하는 傾斜路, 其他 이와 類似한 것을 包含한다.)는 다음 各號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設置 하여야 한다.

1. 駐車臺數 10臺未滿의 駐車場 : 1次線

2. 駐車臺數 10臺以上의 駐車場으로서 出口와 入口가 分離되지 않는 駐車場 : 2次線

③ 建築物 附設 駐車場의 1個所 바닥面積의 合計가 1,000 平方미터 以上인 경우에는 出口와 入口를 따로 設置 하여야 하며 出口와 入口의 幅은 다음 各號에 定하는 바에 依한다.

1. 駐車面積 1,000 平方미터 以上 2,000 平方미터 未滿 : 1次線

2. 駐車面積 2,000 平方미터 以上 : 2次線

④ 第 2 項 第 3 項에 依한 建築物 附設 駐車場 自動車 進入路의 幅은 다음과 같다.

1. 1次線 : 3.5미터以上

2. 2次線 : 5.5미터以上

#### 第 4 章 條則

第15條 (代行運營) 市長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市營駐車場의 管理를 區廳長에게 委任하거나 法人 또는 個人으로 하여금 運營을 代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代行運營者가 法 第15條 第 2 項의 規定에 依한 管理規程을 定하여 施行하여야 한다.

第16條 (代行料) 前條의 代行에 있어서 代行者는 月収人額의 3割에相當하는 代行料를 市長에게 納入하여야 한다.

한다.

다만, 市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代行料를 減免할 수 있다.

第17條 (代行權 讓渡制限) 代行者는 市長의 事前 承認 없이 代行權을 他人에게 謂渡 또는 貸與하지 못한다.

第18條 (代行申請) 法人 또는 個人이 市營 駐車場의 運營을 代行하고자 하는 者는 다음 書類를 具備하여 市長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1. 申請者 住所, 姓名

2. 位 置

3. 面 積

4. 使用期間

5. 事業計劃書

第19條 (簡易路外駐車場) ① 市長은 駐車場 需要上 特히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경우에는 都市計劃으로 하지 않는 簡易駐車場의 設置를 許可할 수 있다.

다만, 都市計劃의 施行上 必要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② 簡易路外駐車場 管理 方法에 關하여는 法 第15條 第 2 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20條 (施行規則) 이 條例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規則으로 定한다.

#### 附 則

① (施行日) 이 條例는 1981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 (廢止條例) 이 條例施行과 同時に 大邱市 共營有料駐車場設置 및 運營條例(1973. 4. 6 條例 第778條) 및 大邱市駐車場整備地區內 建築條例(1977. 1. 14 條例 第994號)는 이를 廢止한다.

③ (経過措置) 大邱大 共營有料駐車場設置 및 運營條例에 依하여 設置된 路上駐車場은 이 條例에 依하여 設置된 것으로 본다.

#### 주 차 장 요 금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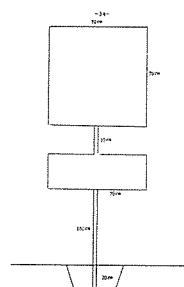
(별표 1)

(단위: 원)

지 역 별	차 종 별	주 차 요금 (30분당)	회 수 권 (1일)	정 기 권 제 (월)		
				전 일	주 간	야 간
1 급 지	보통 자동차	170	2,040	51,000	25,500	25,500
	소형 자동차	120	1,440	36,000	18,000	18,000
2 급 지	보통 자동차	120	1,440	36,000	18,000	18,000
	소형 자동차	70	840	21,000	10,500	10,500

※ 보통자동차 중 영업용 승용차가 승하차 후 즉시 출발하기 위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 주차장에 임시 정차할 때에는 주차요금을 적용하지 않고 30원을 징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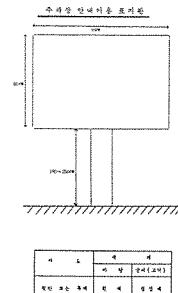
비 고	1. 금지 구분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주차시간이 30분미만인 때에는 이를 30분으로 한다. 3. 주간은 08:00부터 20:00까지 야간은 20:00부터 익일 08:00까지로 한다. 4. 차종별 구분은 도로운송차량법 시행규칙(별표 1)에 의하여 법 제 2조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2륜차는 제외한다. 다만, 대형 특수 자동차는 보통자동차에, 소형특수자동차는 소형보통자동차에 준하여 취급한다.
-----	---



### 옥외 주차시설 기준

(별표 2)

구 분	옥 외 주 차 대 수
연 면 적 2,000평방미터 이상 5,000평방미터 미만	소요주차대수의 $\frac{20}{200}$ 이상
연 면 적 5,000평방미터 이상	주요주차대수의 $\frac{30}{100}$ 이상



주차장 설치기준 표지판

재료	색 채		
	바탕	글씨(고딕)	주차방법
철판 또는 목재	흰색	검정색	바로둠 가로둠 모로둠

재료	색 채		
	바탕	글씨(고딕)	주차방법
철판	하늘색	흰색	바로둠 가로둠 모로둠

### 附 則

- ① (시행일) 이條例는 1982. 12. 1. 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條例施行 당시 이미 建築許可 또는 承認된 것과 신청이 접수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大邱直轄市建築委員會審查基準

#### 目的

本基準은 建築關係 法令에 定한 事項과 都市環境 保存上 必要한 建築物 및 周邊 空間의 有益한 造成을 為하여 必要한 事項을 細部的으로 調整하여 實効性있는 都市建築行政 實現을 為함.

#### 造景審查基準

##### 1. 根據

82.7.7. 施行

○建築法 施行令 第15條

○大邱直轄市 建築條例 第27條

##### 2. 基準

###### 가. 造景面積

- 1) 生育可能한 位置로서 最小幅 60센치미터 以上인 面積
- 2) 枝下高 2 미터 以上
  - 樹冠高: 1 미터 以上
  - 樹冠幅: 1 미터 以上

• 胸高直徑: 7 센치미터 以上인 樹木

• 路線 美觀街路邊 垈地안의 空地에 植栽할 境遇는 水平投影面積

나. 屋上造景(土壤以外의 建築物 또는 構造物等에 接近 造景하는 境遇)

○植生에 支障이 없는 構造로 하여야 하고 盛土 깊이는 아래 基準值 以上으로서 樹種에 따라 成長에 支障이 없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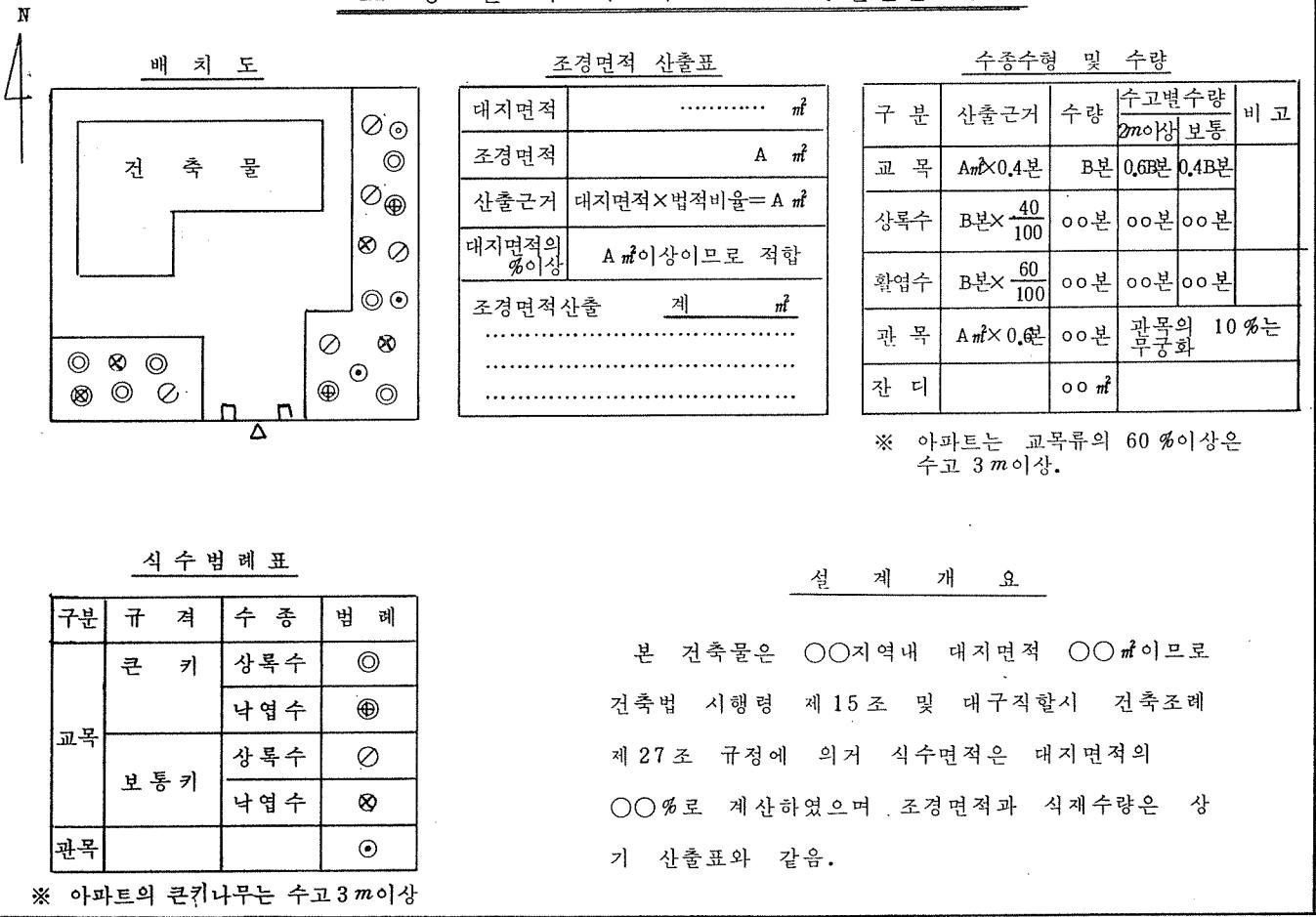
樹 高	盛 土 깊 이
2 미터 미만	60센치미터 以上
2 미터 이상 3 미터 미만	70 " "
3 미터 以上	80 " "

※ 建築 455-19225 (82. 9. 10)로 建築行政事業 指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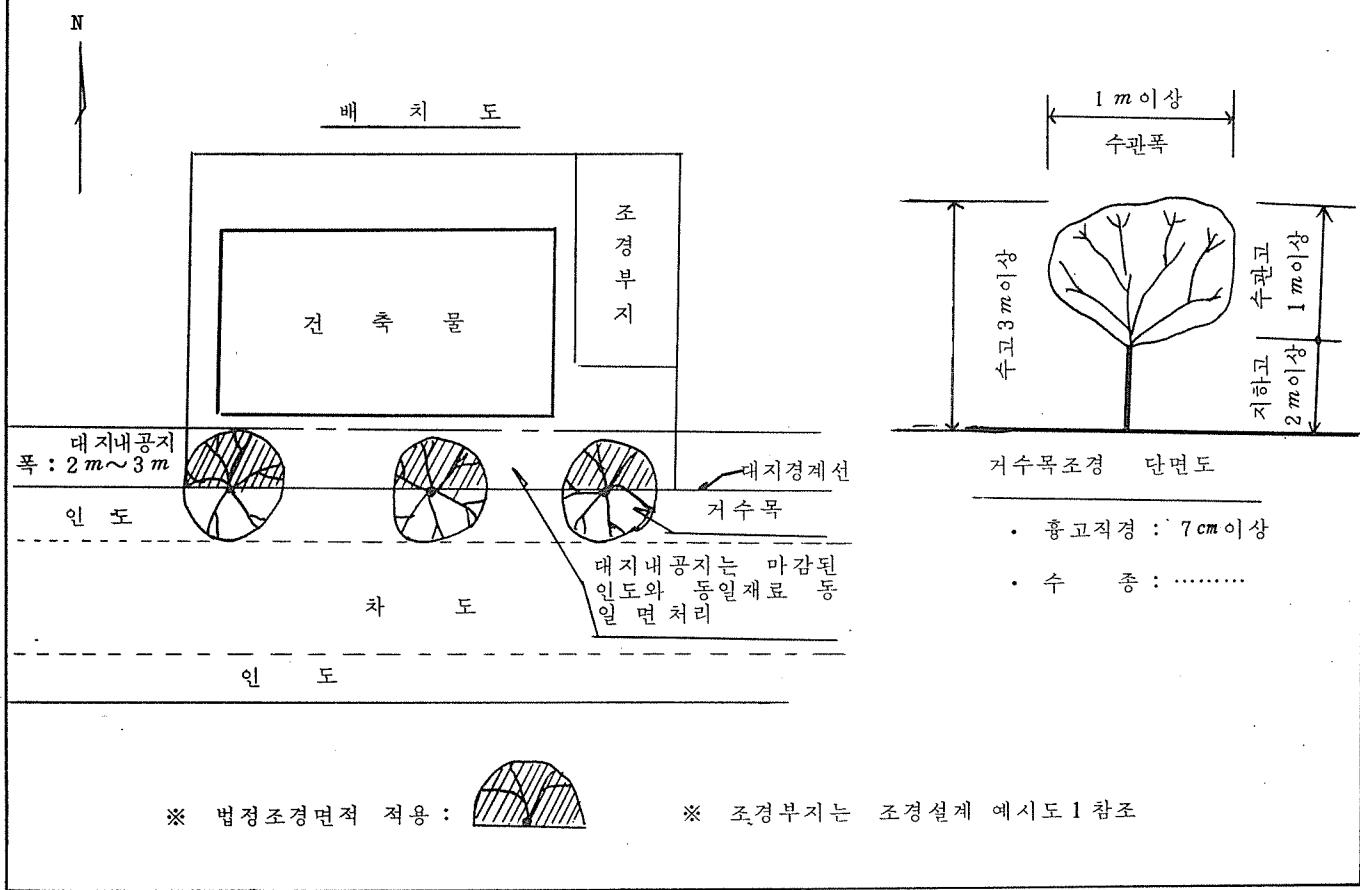
○대지내 조경시 판목의 10% 以上은 무궁화 植栽

※ 別添 조경설계 예시도(일반建築物 美觀地區內 建築物)

## 조경설계 예시도 1. (일반건축물)



## 조경설계 예시도 2. (미관지구내 건축물)



## 機械式駐車場審査基準

82. 7. 7 施行

82. 11. 11 改定

### 1. 昇降機式 駐車場

#### ○對 象

- 土地利用上 부득이한 境遇로서 建築計画上 効果的으로 使用 할 수 있고 管理能力이 있다고 認定되는 境遇에 限함.
- 管理能力 不認定 建築物  
市場, 百貨店, 아파트 等 이와 유사한 분양 對象建築物

### 2. 二段式 駐車場

#### ○對 象

- 土地利用上 부득이한 境遇로서 建築計画上 効果的으로 使用 할 수 있는 管理能力이 있다고 認定되는 境遇로서 一定 規模以上 建築物은 屋内에 設置 할 수 있음.
- 管理能力 不認定 建築物  
市場, 百貨店, 아파트 等 이와 유사한 분양 對象建築物
- 建築物 規模  
延面積: 3,000m<sup>2</sup> 이상  
層數: 5層이상

### 3. 垂直循環式 駐車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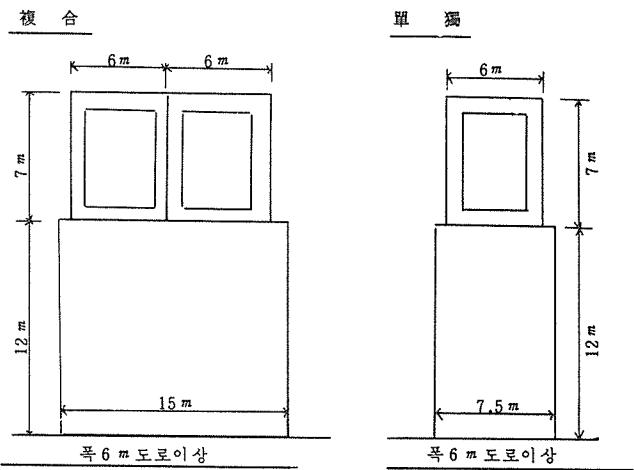
- 土地利用上 부득이한 境遇로서 建築計画上 効果的으로 使用 할 수 있고 管理能力이 있다고 認定되는 境遇로서 아래 對象 基準에 적합한 建築物에 限함.
- 管理能力 不認定 建築物  
市場, 百貨店, 아파트 等 이와 유사한 分양 對象建築物

#### ○對 象

5層以上 建築物로서 法規上 駐車 20臺以上인 建築物

#### ○基 準

- 2組以上으로 하되 1조당 10臺以上
- 昇降場前庭의 길이: 出入口 方向 12m 이상
- 出入口는 地面에 두되 屋内建築物式
- 昇降場前庭의 幅: 1組當 昇降場 中心에서 左右 3. 75m 이상
- 昇降場前面 道路幅: 6m 상道路에 連接



### 4. 其他 機械式 駐車場

#### ○施行保留

## 아파트設計審査基準

### 1. 目 的

- 아파트에 關한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으로서 共同住宅으로서 住居環境을 改善하고,
- 隣近住居의 保護와 아파트의 質的向上等 아름다운 都市環境을 造成함에 有함.

### 2. 對 象

10世帯 以上의 아파트

### 3. 法的根據

○ 建築法 第44條의 2 및 同法施行令 第97條

### 4. 統制 및 審査計劃

- 塔地의 規模: 800m<sup>2</sup> 以上
- 塔地의 隣接 道路: 6m 以上
- 建蔽率: 40% 以内, 但 高度地區 60% 以内
- 容積率: 150% 以下 (20世帯 미만일때)
- 層數制限: 5層以下 (20세대 미만일때)  
12層以下 (20세대 이상일때)  
但, 土地利用上 부득이하거나 주변의 환경에 장애가 없을때는 例外임.

#### ○ 建築物의 構造

- 世帶間 間壁은 空間衝擊에 반드시 防音施設
- 主要 벽두께 19cm 以上
- 발코니가 大路邊에 向할 境遇 반차폐나 造景施設
- 외부 현관 높이: 2.3m 以上
- 외부 현관 디딤판 높이: 10cm 以上
- 層 高: 2.7m 以上
- 발코니의 有効幅: 1.0m 以上
- 屋上 및 발코니 난간 파이프: 공간간격 10cm 以下로 하고 어린이 발디딤 높이에서 높이 1.1m 以上

#### ○ 建物의 配置

- 西面이 閉鎖되어서는 안됨.

#### ○ 地盤內 道路

- 主要出入道路는 6m 以上

- 地盤내 道路는 鋪裝하여야 한다.

#### ○ 駐 車 場

- 20坪未満과 再開發 地區에 있어서는 주차방법에 依한 駐車臺數

- 世帶當 專用面積 20坪以上  
商業地域：延面積 200m<sup>2</sup> 마다 1臺  
其他地域：延面積 400m<sup>2</sup> 마다 1臺
- 어린이 놀이터
  - 世帶當 : 3.3 m<sup>2</sup> (1坪)
  - 놀이터의 最小幅은 5m 이상
  - 必須施設 : 그네, 미끄럼틀, 철봉, 시소, 모래사장 중 1個 以上

但, 高度地區 再開發地區 例外
- 下水道
  - 地內 下水道設置
- 造景
  - 조경(建築法 施行令 제15조 조례 제27조)
  - 垦地面積의 1/10以上
  - 造景面積의 最小幅은 0.6m 以上
  - 場所選定 : 生育可能地(육상식수는 제외)
  - 식재면적 산출 표시
  - 담장 : 道路邊 투시담장
  - 수벽 - 대지사정에 따라 설치  
교목의 수종지정 - 느티나무, 은행나무, 푸라타나스, 백합수, 메타세코이야, 전나무, 히말라야시다, 벽오동
  - 수고 3m 이상이고 胸徑 5cm 이상인 것이 교목록의 60% 이상이고 이때의 터파기는 幅80cm, 깊이 80cm 이상
- 汚物收去 施設
  - 世帶別 設置
  - 멘홀 設置時  
位置 : 다스트슈트 下단  
깊이 : 1m 以内
  - 수거구 : 取去에 便利하게 設置  
但, 1層 바닥이 地盤보다 1m 以上 높을시  
例外
- 에너지 및 資源利用
- 취사용 가스施設 (30世帶以上) 을 권장한다.
- 煙房 热量 均配를 為한 上下向 절충식配管 (6層以上인 경우)
- 煤炭ガス 防止가 可能한 構造로 한다.
- 지하수 開發 의무화 (20世帶以上)
  - 生产量 세대당 1일 1Ton 以上
  - 식수와 분리배관
  - 수조세대당 1Ton 이상 저장
  - 취수관지를 2인치 이상
- 保安燈設置
  - 垦地四面에 1個所씩 設置
- 日照圈 및 眺望保護
  - 正北에 기존 住宅 있는 경우 기존住宅의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아파트 높이 以上 離隔  
但, 土地利用上 其他 부득이한 경우 例外
- 分讓方法
  - 基礎 中間檢查 받은후 分讓 (住公, 指定業體, 市營 은 除外)
  - 分讓安內書 内容改善
  - 分讓面積明示 : 專用, 公用面積
  - サービス面積明示 : 大用도실, 배란다 等
  - 世帶別規範 (0坪型) 는 專用面積으로 統一
- 不實工事豫防
  - 工事監理者 工程月報提出 (翌月 5日 까지)
  - 有資格者 現場代理 常駐措置
  - 建築職公務員 現場確認 確行
- 5. 建築許可  
아파트 建築許可是 建築委員會의 事前審查를 거쳐야 한다.
- 6. 其他
  - 本 基準에 規定하지 않은 事項에 對하여는 建築法, 住宅建設促進法, 其他法 및 大邱市 建築條例의 規定에 依 한다.

## 아파트建立에 따른 下水道施設指針

### 目的

- 아파트 住居 環境改善
- 下水道 处理円滑

### 方針

- 아파트 建立地 周邊 下水道施設 義務化

### 施行要綱

- 아파트 許可 申請書에 下水道施設圖書를 作成添付 하여야 한다.

- 規格 : 大邱市 指定規格
- 區間 : 周邊道路의 測構 (기설 下水道에 連結하여야 한다)
- 下水道에 關한 設計審查 施工監督 및 竣工檢查는 區廳 建設課長의 責任下에 施行한다.

### 施行日

- 이 指針은 1979. 7. 1부터 施行한다.  
但 本指針 施行以前에 許可된 것은 除外한다.

## 聯立住宅設計審查基準 (20세대미만)

### 目的

聯立住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거환경을改善하고 아름다운 都市環境을造成함에 있음.

### 法의根據

建築法 第44條의 2 및 同法施行令 第97條

### 建築計劃

- 塔地는 世帶別로 區劃할 수 있다. 이 境遇 透視式 담장 또는 樹壁으로 하여야 한다.
- 建物의 形態는 가늘고 긴 長方形의 形態를 止揚한다.
- 聯立住宅의 용적률은 다음과 같다.
  - 2層 : 100%以下
  - 3層 : 120%以下
- 各 地帶마다 最小限의 住居施設 寢室 2個以上 便所와 부엌은 각각 1個所以上 갖추어야 한다.
- 塔地내에는 世帶別 出入을 為한 通路를 4m以上

確保하여야 한다.

- 지하수 개발 의무화(20세대이상)
  - 生産량 세대당 1일 1톤 이상
  - 식수와 분리배관
  - 수조세대당 1톤이상 저장
  - 취수관지름 2인치 이상

### 建築許可

- 聯立住宅의 建築許可是 建築委員會의 事前 審查를 거쳐야 한다.

### 用途制限

- 聯立住宅에는 他用途를 複合用途로 하여 建築할 수 없다. 다만, 住居生活을 害하지 않은 경우는例外로 한다.

### 其他

- 其他 本 基準에 規定하지 않은 事項에 對하여는 建築法 및 大邱直轄市 建築條例의 規程에 依한다.

## 市場 및 建築許可 規制

- 都市計劃施設인 市場의 土地利用度增進, 市場現代化促進, 職住近接에 依한 交通難解消, 零細商人 住居確保를 위함.

- 아파트 세대수 20세대 미만
- 市場과 아파트의 出入技能을 完全 分離計劃

- 施行日字      • 80. 1 . 11.

## 住居專用地域內市場建築規制

### ○地区指定

地区別	区劃整理 事業施行	住居專用 地域告示	同地域內 市場敷地 變更 (住居地域)	位 置
大明地区	67. 8. 10	建設部告示 第 187 号 74. 6. 12	建設部告示 第 37 号 76. 3. 27	大明洞 872番地 大明洞1040番地
泛魚地区	70. 3. 12	"	"	泛魚洞 291番地 泛魚洞 442-1番地 晚村洞 640-1番地
壽城地区	72. 4. 10	"	"	黃金洞 746番地 上 同 44番地 池山洞 994外 5筆

하는 건축물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한다.

1980. 12. 20.

건설부장관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다음 각호의 건축물 다만 “별표”에 계기하는 시·군의 행정구역 내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평방미터 미만인 것을 제외한다.

1. 단독주택(연탄아궁이식 온돌로 난방하는 연면적 85 평방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을 제외한다) · 공동주택 · 기숙사
2. 균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부표 제4 항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3. 노유자시설 · 의료시설
4. 교육 및 연구시설 · 체육관 다만, 시장 · 군수가 기능상 열손실 방지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부분을 제외한다.
5. 업무시설
6. 숙박시설
7. 백화점 · 슈퍼마켓 · 상점
8. 위락시설
9. 관람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 전시장

### ○建築規制

- 높이 8m以内 2層以下
- 1層以下 : 店舗
- 2層 : 아파트(20世帶未滿)

### ○施行日字

- 1980. 4. 28.

### 건설부 공고 제145호

건설부 공고 제123호(1979. 9. 8)를 폐지하고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